

[별표1] 연구실적 인정 기준

분야별	구 분	학 회 지			
		국내		국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	SCI급 학술지	일반학술지
학술논문	단독	100%	20%	300%	150%
	2인	70(80)%	14(16)%	210(240)%	105(120)%
	3인	50(60)%	10((12)%	150(180)%	75(90)%
	4인 이상	30(40)%	6(8)%	90(120)%	45(60)%
	석사학위논문			100%	
	박사학위논문			200%	
	구 분	전문서적	교과용 1종도서	번 역 서	개 정 판
저 서	단독	100%	100%	50%	30%
	2인	70(80)%	70(80)%	30%	10%
	3인	50(60)%	50(60)%	10%	0
	4인 이상	30(40)%	30(40)%	0	0
창 작 활 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 「[별첨]2.연구업적」 중 창작활동 세부기준 준용			
산업재산권		발명특허 건당		100%이내(심의하여 인정)	
자 격		기술사 자격취득		150%	

* ()의 숫자는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인 경우임

* 비고 : 1. 국내 일반학술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만을 인정한다.

2. 국제 일반학술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만을 인정한다.

3. 저서는 국내외 사업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한 서적으로 저자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 중·고등학교 1종교과용 도서, 전문대학 이상 교재만 인정한다.

4. 연구실적은 전공 및 담당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2] 연구 및 교육경력 산출기준

경력 내용	환산인정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②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	50(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⑥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겸임교수, 초빙교수(객원교수, 강의 교수 등)의 교육경력	50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40
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다. 조교 및 체육 코치 등	
①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②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70

경력 내용	환산인정률(%)
2. 연구경력	
가. 최종 학위취득자	
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 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자의 연구경력	박사과정 재학년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100
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마. 다음의 연구원(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①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100
②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100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100
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100
바.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경력 내용	환산인정률(%)
3. 산업체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등 근무경력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나.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	
①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졸업자로서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70
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④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5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100
② 변호사 개업기간	100
③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 개업기간	50
④ 한국 해양대학, 부경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 (기관사) 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70

경력 내용	환산인정률(%)
라. 의사등 근무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50
② 의(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50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	70
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임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마. 성직자 근무 경력	
①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50
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근무경력	
①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예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	50

[별표3] 자격증 산출기준

구분	기술사·건축사·변리사·변호사 등(분야최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기타(국가공인자격)
배점	3	1.5	1.0	1.5 기준 1급(정) 1.5, 2급(부) 1.0

- 관련 분야의 자격증만을 인정
 - 국가공인자격만 해당하며 민간자격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다만, 민간자격의 경우 검정기준,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증으로 관련 분야에서 인정 · 통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심사위원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타(국가공인자격)” 으로 인정 될 수 있음
 - 동일종목의 자격증일 경우 상위종목의 자격증만을 인정
- [예] 정보처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소지자일 경우 정보처리기술사만 인정
- ※ 기술사의 경우 연구실적에 포함한 경우 제외